1.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

2. 건강보험은 2003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법으로 당연 적용하도록 함

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비례정률제에 따라 부담

4. 건강보험 급여는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함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의 심의, 의결 기구

7.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8.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

9. 요양급여의 입원은 의료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먼 거리, 피로회복 등은 허용 안 됨

10.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독일

11.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앙부처의 고용노동부에서 관장

12. 우리나라는 공적의료보험을 실시하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13. 사회보험 방식은 주로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14.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의 장단점

행위별수가제

장점: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단점: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두제

장점: 진료비 지불의 관리 운영이 편리, 지출 비용의 사전 예측 가능

단점: 의사들의 과소 진료 우려

봉급제

장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 비용이 독립계약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단점: 개인적, 경제적 동기가 적어 진료의 질을 높인다거나 효율성 제고 등의 열의가 낮음

포괄수가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

장점: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과잉진료와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보험자간의 마찰 감소, 진료비 청구방법의 간소화

단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 조기 퇴원

총액계약제

장점: 과잉 진료, 청구의 시비가 줄어들게 됨,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가능

단점: 보험자 및 의사 단체간 계약 체결의 어려움 상존, 전문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 받기 위한 갈등 유발 소지

15.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가입자로부터 갹출), 국고지원(정부가 100분의 14), 건강증진기금(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으로 이루어짐

16. 독일에서 사용되는 지불 방식은 제3자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17. 우리나라가 1977년도에 처음으로 강제 의료보험 적용을 실시했을 때는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부터 강제 적용

1.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의 부과, 징수

- 보험급여비용 지급 및 사후관리

-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와 조사연구, 국제협력

- 기타 업무

2.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하는 지급 방식

- 총액계약제

3. 진료에 소요된 약재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사가 제공한 진료 행위에 따라서 진료비, 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방식

- 진료행위별수가제

4.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임의적용시 재정파탄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상호 위험분산

- 형평성: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

- 보험급여의 균등: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균등하게 받음

- 단기보험: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수입, 진료비지급이 이루어짐

- 수익자 부담 원칙: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

-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건강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징수에 강제성 부여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요소

1)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

- 소득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자동차

6.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원 조달

- 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가입자와 사용자 등으로부터 갹출하는 금액, 직장가입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

- 국고지원: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정부가 지원

- 건강증진기금: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7. 사립학교의 교원인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액은 몇 퍼센트인가?

- 사립학교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50%, 학교경영자가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8.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 증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1) 헌법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사회보장법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을 규정

3)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

4) 그 외 다수

9.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지원)를 받는 사람

그러나 다음의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음

) 유공자 등 의료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었으나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0. 국민 의료비 증가 원인은 무엇인지

1) 의료수요의 증가

- 국민소득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본인부담의 감소, 건강보험급여의 확대

- 인구집단의 고령화, 의사 수의 증가

2) 의료생산비용의 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

- 재료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비용 상승, 고가의료장비 수입

- 고급의료기술, 치료나 증상완화 등 중간단계기술의 발달

3) 진료비 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

11.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시기는 언제인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전국민 의료보험화가 됐다

-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2.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인지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사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보장 또는 기본적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가입 임의가입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보험보호대상 질병, 분만, 산재, 노령, 실업, 폐질에 국한 발생위험률을 알 수 있는 모든 위험

수급권 법적 수급권 개인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 부담 능력무관(동액 부담)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률제 주로 정액제

부험료 수준 위험률 상당 이하 요율 위험률 비례 요율(경험률)

보험자의 위험선택 할 수 없음 할 수 있음

급여수준 균등급여 차등급여(기여비례 보상)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함

보험사고 대상 주로 대인보험 주로 대물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14. 사회보험 방식과 국가보험 서비스 방식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기

1)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

-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

-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베버리지 방식)

- 재원의 대부분이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되고 의료공급체계도 국가의 책임하에 조직화되어 있어, 전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있음

-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

2) 사회보험방식(NHI)

-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견지하되 이를 사회화하여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비스마크르 방식)

-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

-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 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

-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

15. 건강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지

1)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나 특례규정에 의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2) 건강보험 적용제외자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그러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있던 사람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되었으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음

3)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16.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관장하는 자는 누구인지

-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17.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인지

1)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2)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부양 받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소득 및 재산 요건: 피부양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18.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직장가입자의 자격 요건

1)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2) 적용 제외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지방의회의원)

-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i)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ii)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iii)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iv) 근로자가 없거나 위 i)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19. 요양 급여 부여의 계약 및 결손 처분 등 이걸 의결하기 위해서 두는 위원회

- 재정운영의원회

20. 자격 취득, 변동, 상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신고자는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 사용자 및 세대주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자격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국방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 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사용자와 세대주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21.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로 옳지 않은 것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음.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자격을 얻음

1)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22.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예: 귀화, 혼인, 입양 등의 외국국적 취득)

3.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예: 이민)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지역가입자에 관한 규정)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